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제정	2009. 06. 24.
개정	2009. 12. 08.
개정	2011. 03. 15.
개정	2011. 08. 31.
개정	2012. 04. 17.
개정	2013. 08. 14.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02. 13.
개정	2014. 04. 02.
개정	2014. 10. 06.
개정	2015. 05. 06.
전부개정	2016. 02. 19.
개정	2017. 02. 0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7조(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제14조(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선정평가기준 등), 제28조(과제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9조(과제결과의 평가)에 의거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평가 및 전문가 관리, 제41조(제재조치)에 의한 문제발생시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회” 라 함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시 평가진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심의위원회” 라 함은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사업비 조정, 협약기간 연장 등 과제관리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가”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콘텐츠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의 평가 또는 심의위원 등으로 참여하였거나 내외부 추천에 의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산·학·연 등의 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9.>
4. “서면평가”라 함은 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9.>
5. “발표평가”라 함은 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책임자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9.>
6. “현장방문평가”라 함은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을 방문하여 제시한 수행 계획이나 결과의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6.2.19.>
7. “최종심의”라 함은 서면,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등을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전문가 선발방법) ① 평가 및 심의위원은 전문가인력Pool 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인력 및 관련 협회·학회, 주무부처, 소속 직원, 예산·재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전문가 인력Pool 시스템에서 선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에게 보고 후, 전문가인력Pool시스템에 사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개정 2011.3.15.> <개정 2016.2.19.> <개정 2017.02.02.>

제4조(전문가 자격) ① 평가 또는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계

- 콘텐츠관련분야 : 5년 이상 경력자
- 기술 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연구개발 분야 실무 및 개발경력 5년 이상인 자
<개정 2013.12.31.>

2. 학계 : 2년제 대학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자 <개정 2011.3.15.>
3. 언론계 : 콘텐츠 언론관련 전문 종사자로 3년 이상 경력자
4. 보조금 전문가 <신설 2016.2.19.>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전문가인력 Pool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제1항의 자격이 허위 경력으로 밝혀진 경우
2. 금품수수, 업계 이면협상 등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조항신설 2012.4.17.>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등 각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 및 내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정평가를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최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예산·재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선정평가위원회는 공모 관련 신청서 및 서류의 심의내용을 전담 기관(보조사업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개정 2016.2.19.> <개정 2017.02.02.>

②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

<개정 2011.8.31.>

③ 평가위원의 세부 구성 및 선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2.13.> <개정 2015.5.6.> <개정 2016.2.19.>

1. 평가위원의 세부구성은 선정전담부서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제①항과 같이 총 7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선정평가를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는 7인 내외(최소 5인 이상)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 <개정 2017.02.02.>

2. 선정전담부서는 해당 외부전문가 구성인원의 3배수를 추천한다. 이 경우 선정전담부서는 심사평가 담당부서에 추천 명단 통보 전, 이해관계자 해당여부에 한하여는 해당 사업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2.>
 3. 선정전담부서는 제2호 인원을 3~5일전(토, 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심사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하며, 심사평가담당부서는 통보받은 추천순위에 따라 참석가능자 순으로 7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선정평가를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는 7인 내외(최소 5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
- ④ 평가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2.02.>
1. 과제당 지원규모가 5억원 또는 2억원(총제작비 20억원 이상) 이상인 경우
 2. 직전 년도 국회, 감사원 또는 정부 지적사항이 발생한 사업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 <조항삭제 2011.3.15.>

제6조(평가위원회 분과구성)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2(평가위원 관리)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평가 종료 후, 별표 2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의 전문성, 보안유지, 평가태도 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심사를 하여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개정 2016.2.19.> <개정 2017.02.02.>

②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각 평가별 과반수를 초과하는 평가항목에 대해 불량 또는 매우 불량 판정을 받은 위원은 진흥원 평가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전담부서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 참여 배제 기준을 별표 2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2.4.17.> <개정 2014.10.6.> <개정 2017.02.02.>

③ 제1항의 심사는 심사평가 전담부서와 해당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자는 부서장 또는 해당사업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2.02.>

④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공정한 평가 및 심사, 심의를 위해서 최근 2년에 걸쳐 10회 이상의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평가위원은 이후 1년간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해당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02.02.>

제7조(평가위원회 평가)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1인을 제외한 평균점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과제목표 및 내용, 기간,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8.>

② 심의위원회 구성절차는 제5조 3항의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와 같다. <개정 2011.3.15.>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2.19.>

1.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사업비 조정, 사업기간 연장 등 과제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간사는 심의안건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불참 등 유고시에는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9.>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참여제한)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해당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9.>

1. 평가(심의)대상과제의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및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소속된 자
2. 평가(심의)대상과제의 과제·사업책임자와 최종학위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인 자
3. 평가(심의)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4. 평가자의 허위 이력 및 경력 확인자 <조항신설 2013.8.14.>
5. 기타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6. 당해연도 동일장르(평가위원 분류체계 상 대분류에 의함)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3회 연속 참여하는 자 <개정 2015.4.27.> <개정 2017.02.02.>
7.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5회 이상 참여하는 자 <신설 2017.02.02.>

② 평가위원 위촉단계에서 전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이 처음부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당해년도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자는 동일 지원사업에 전문가 또는 사업수행 등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다.

제 3 장 평가 및 심의

제11조(평가의 구분) 지원사업 및 과제의 평가는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로 분류한다.

제12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신규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선정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선정평가는 서면, 발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 현장 방문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수행계획서) 및 평가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적합성 검토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19.>

1. 지원과제 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여부
2. 참여자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선정평가기준을 정할 경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방법은 각 평가단계별(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등)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아래 각 호의 가점을 가산한다. <개정 2016.2.19.>

1. 지역(비수도권)소재 콘텐츠 업체인 경우 5% 이내
2.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평가 시 5% 이내
3. 기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신설 2011.3.15.> <개정 2014.4.2.> <개정 2016.2.19.>

제12조의2(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문화부 훈령 별표2,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별표3에 따라 당해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금의 규모 및 집행 계획,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 포함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로 선정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② 동일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지원금(간접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평가결과, 해당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최대 3회 까지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또는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1. 법령 등에 따라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3. 지속적 지원을 통해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로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인 경우
4.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3회 이상 모두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경우
5. 전문지식 또는 기술 등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가 소수인 경우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5호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사유로 예외 적용할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지원금(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받은 경우
2.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선정 제외된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4. 기타 해당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이 수행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우리원 상임 또는 비상임 임원이 대표 또는 상임 임원으로 있거나 작전에 있었던 기관인 경우 <신설 2017.02.02.>

제12조의3(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공모) ①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을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② 공모방식을 통해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기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필요시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교부신청 사업계획서에 공모 예외 사유 및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명시하여 승인을 받거나 별도로 공모 예외 사유 및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선정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1.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를 수행하는 경우

2.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를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지원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중간평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의 수행현황을 확인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14조(결과평가)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최종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개발 결과물을 근거로 결과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2.19.>

제15조(평가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개발 결과에 대한 위원회 평가 결과가 “불량” 인 과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1. 종합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2. 협약해지, 제재조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1. 협약변경 중 승인사항에 대한 결정사항
2. 제재조치 여부 및 지원금(간접보조금) 환수여부
3. 예산변경 검토의견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이의신청) ①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선정

평가결과,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평가, 상대평가에 의한 탈락 관련사항은 이의신청에서 제외한다. <조항개정 2012.4.17.> <개정 2016.2.19.>

②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재평가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개정 2012.4.17.> <개정 2016.2.19.>

제17조(평가결과물 등 지원과제 관련 자료의 보존)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지원사업별로 평가완료 후 평가표, 평가결과물 및 결과물 등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8조(단계평가) ①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총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다년도 사업에 대하여 당해단계 사업기간 종료시점에서 사업수행결과 및 차기단계 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당 다년도사업의 계속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1.3.15.> <개정 2016.2.19.>

② 단계평가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일부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개정 2011.3.15.>

③ 단계평가는 최종점수의 순위에 의해 계속유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 점검실적을 단계평가지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제 4 장 보 칙

제19조(비밀의 유지) ①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 중에 지득한 기술이나 사업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사업의 평가에 참여한 자는 전담기관(보조사업자)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20조(평가 및 심의수당 지급)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부 칙(2009.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관련 조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한다.

부 칙(2017.02.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3.15.> <개정 2012.4.17.> <개정 2015.4.27.> <개정 2016.2.19.>

평가(심의)수당 지급 기준

1.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평가(심의)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직원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해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반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기준으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원)

구분	지급금액	비고
평가(심의)수당	(100,000원/1시간) (최대 600,000원/1일 6시간 기준)	· 국외 : 실소요액

<별표 2.> <신설 2012.4.17.> <개정 2014.10.6.> <개정 2017.02.02.>

※ 단, 선정평가별 특성과 내용에 따라 일부 심사항목 및 기준은 변경 가능

평가위원 심사 기준

- 사업 담당부서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기준	점수
성실성	5점 척도 <가이드>	☞ 심사시간 및 일정 준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심사 전반을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 및 무단으로 심사불참, 무단이석 등 ☞ (필요시) 사전에 해당 심사의 내용을 숙지하고, 심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 사항 이행 여부 등	
전문성	1점 매우불량 2점 불량	☞ 해당 심사장르 등에 관한 지식 수준 및 업력 수준	
적극성	3점 보통 4점 우수	☞ 해당 심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문, 조언, 평가의견 제시 정도	
부합성	5점 매우우수	☞ 본원 심사위원으로서의 자질 등 · 심사서류 등 심사내용 전반에 대한 보안 유지 여부 · 근거 없는 비방, 유언비어 배포 등 평가에 지장을 주는 언행 등 · 제안 업계와 학연, 지연, 친인척 관계 등이 있음에도 통보 없이 심사에 참여	
총평			총점 20점

- 심사평가지원팀

평가항목	평가척도	평가기준	점수
성실성	5점 척도	☞ 심사관련 섭외, 참석, 규칙준수, 공정성, 성실도 등 전반평가 ① 섭외 시 불쾌감 표시 등 반응도 ② 지각, 뒤늦은 불참통보, 무단불참, 무단이석 등 ③ 보안서약 위반, 기피신청 위반, 음주 ④ 평가 시 유의사항 위반(자극적 발언, 공정성 오해유발, 사건피력, 협의평가 유도 등)	
총평			총점 20점

※ ②, ③, ④번 항목 중 1항목이라도 2점 이하일 경우 평가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제12조의2 관련)

기준	검토사항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2호)	세부 내역과제(사업)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수행계획(사업계획) 예산 검토
재무적 안정성	사업자(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자산과 부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주)}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4호)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전년도 사업성과(집행점검서 또는 보조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신규 사업자(주관기관·참여기관)의 경우, 유사 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자원이력(보조사업명·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지원금액(간접보조금액), 주관기관)
수익금 규모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지원과제(간접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예상 수익금의 규모 및 동 수익금의 반환 또는 집행계획의 적정성
수급 제한 대상 여부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보조금·지원금(간접보조금) 수급제한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 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 : 자금의 일부를 주관기관·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